

해외경쟁정책동향

• 본 연합회 •

미 국

연방법무부, 미국 트럭운송협회 의 제안 반대 않기로

연방법무부는 미국 트럭운송협회(American Trucking Associations Inc.; 이하 ATA)가 운송업자 및 화물운송 중개업자 간의 표준협약을 개발·확산하기로 한 것에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 이 표준협약이 반경쟁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연방법무부 측의 입장이다.

연방법무부는 ATA에 대한 자문을 위한 검토서(a business review letter)를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ATA는 운송사업자, 각 주의 트럭운송협회 및 전국 트럭운송협회를 대표하는 전국적인 운송조직이다.

ATA는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운송사업자와 중개업자들 간에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약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표준협약을 제정하여 널리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

여 자문을 요청한 바 있다. 운송사업자들과 운송중개인들은 화물운송에 있어서 계약조건들을 협상할 수 있는 표준협약을 이용할 수 있다. 이 협약에는 적하서비스, 화물에 대한 책임 및 운송이 제대로 안 된 경우의 손해 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표준협약의 이용을 통해, 소규모 중개인들과 운송업자들과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소규모 중개인들이 받는 경쟁상의 불이익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트럭 운송 산업에 사용할 표준협약의 제정은 경쟁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독점금지국장은 검토서에서 언급했다. 또한 “표준협약에는 구체적인 운송료나 기타 경쟁상 중요한 조건들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협약을 사용할지 여부와 그 조항들의 내용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각 사업자들에게 맡겨져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ATA는 운송업자와 중개인 모두 표준협약이나 이에 포함된 규정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비용

과 관련된 조항이나 경쟁상 중요한 규정들은 표준협약에서 빈칸으로 남겨둠으로써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연방법무부의 검토서 절차에 따르면, 단체는 독점금지국에 어떠한 사업과 관련된 경쟁상의 문제들에 관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경쟁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2006. 8. 10.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 제강회사간의 기업 결합시 자산의 일부 매각 요구

연방법무부는 Mittal Steel Company N.V.(이하 Mittal)에 대해 330억 달러 규모의 Arcelor S.A.(이하 Arcelor)의 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3개의 통조림통 공장 중 하나를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 동부 지역의 통조림통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

문이다.

2005년 5월 11일에 연방법무부는 Mittal과 Arcelor의 주식취득에 의한 기업결합건에 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Mittal과 합의를 한 바 있다. 이 합의에서 연방법무부는 Dofasco Inc.(이하 Dofasco)를 ThyssenKrupp AG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Dofasco는 그 당시에 Arcelor가 소유하고 있던 회사이다. Mittal과 Arcelor가 결합할 경우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판단한 것이다. 이 합의에서는 또한 Mittal이 Dofasco를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신하여 연방법무부가 인정하는 사업자에게 자산의 일부를 매각하기로 하고 있었다. 심층 조사를 통해, 연방법무부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반경쟁적이며 경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매각이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런 결정의 결과로서, 독점금지국은 2006년 8월 1일에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신고된 기업결합을 막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동의명령을 제출했다. 이 명령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면, 경쟁상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동의명령을 통해 Arcelor를 인수함으로써 Mittal이 소유하게 될 3개의 통조림 통 공장 중 하나에 대한 매각을 요구함으로써 경쟁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연방법무부는 설명했다.

“제강공장들 중 하나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제품 구매자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 독점금지국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시장에서 경쟁을 유지하는 길이 최적의 가격, 품질 및 서비스를 보장 받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Mittal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6개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2005년에는 5,500만 톤이 넘는 철판과 코일을 생산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약 280억 달러의 이익을 거뒀다. Arcelor는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철강회사이다. 2005년에는 약 4,600백만 톤의 제품을 생산했으며, 415억 달러의 이윤을 냈다. Arcelor는 2006년 2월에 캐나다 철강회사인 Dofasco를 인수한 바 있다. Dofasco는 2005년에 48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여 39억 달러의 이윤을 낸 회사이다.

2006. 8. 1. 연방법무부

독 일

연방카르텔청, 설탕공장 인수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쾰른의 Pfeifer & Langen KG가 설탕회사인 Jülich AG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비록 경쟁사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Pfeifer & Langen KG가 시장의 선도자로서 설탕시장의 집중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경쟁상의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강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인 Südzucker사와 Nordzucker사가 여전히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은 다른 제품과 지역적 관련시장에서는 상당한 시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경쟁상들의 존재와는 별도로, 개정된 규범체계와 그것이 설탕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건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EU 설탕시장에 대한 개선안은 유럽 설탕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점진적인 개방화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보장되었던 설탕회사들과 사탕무 농장을 위한 최저가격제도와 각종 재정지원들이 감소된다. 이에 WTO의 영향도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시장개방은 공급과잉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변수들로 인한 공급량의 증가는 향후 치열한 경쟁 압력을 가져올 것이다.

2006. 8. 10.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폭스바겐에 대한 포르쉐의 주식 보유 증가를 승인

연방카르텔청은 포르쉐가 폭스바겐의 보통주 주식을 25.1%까지 보유하는 것을 승인했다. 지난 2005년 9월에 포르쉐는 폭스바겐의 주식 19%를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쟁상의 상당한 영향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이번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포르쉐와 폭스바겐은 오로지 스포츠카와 오프로드용 자동차 분야에서만 사업이 중복되는데, 이 경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를 형성하거나 강화시키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 기업결합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경쟁상의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승인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6. 7. 7. 연방카르텔청

EU 경쟁위원, 연방카르텔청 방문

Neelie Kroes EU 경쟁위원이 연방카르텔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으로 EU 경쟁이사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간이 보다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연방카르텔청장은 밝혔다.

세계화와 함께 사업자들에 대한 경

쟁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결합, 전략적 제휴, 카르텔 협정 및 시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각종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간의 연계 필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증가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최근 2년간 ECN(European Competition Network)이라고 하는 경쟁당국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왔다. 이는 카르텔 및 각종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한 적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명확한 할당제도가 있다. 동시에 여러 곳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경우에 가장 최적에 위치한 당국이 이 사건을 맡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경쟁원칙을 가능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잘 기능하고 있다. 경쟁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엄청나게 많다. 전기, 가스, 철도, 우정 및 통신과 같이 경쟁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고 있는 분야들도 있다. 카르텔 적발도 경쟁당국이 해야 할 주요한 일이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연방카르텔청이 특히 EU위원회와 공조하여 EU 역내에서 경쟁법을 집행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시 당국들과의 장기의 배타적 구매계약 사건에서 EU 당국의 보내준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와 동시에 Kroes 경쟁위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쟁제

한행위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이 지원할 뜻을 보였다.

한편 연방카르텔청장은 많은 경쟁제한행위들이 국가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지원, 조세혜택 또는 일정 부문에 대한 특혜조항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는 “경쟁당국이 이러한 행위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 주저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통신, 항공, 가스 및 전기 사업 부문을 통해 우리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2006. 7. 7. 연방카르텔청

E U

EU위원회, Ineos의 BP 사업부문 인수 승인

EU위원회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Ineos사가 독일 도르마겐(Dormagen)에 있는 BP의 에틸렌 산화물과 글리콜(Ethylene Oxide/Ethylene Glycol)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했다. 2005년 12월에 위원회는 Ineos가 BP의 사업 중 도르마겐 사업부문을 제외한 올레핀과 정제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한 바 있다.

위원회의 예비 조사에서는 Ineos와 BP 도르마겐 사업부문의 결합이

심각한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층조사에서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EU 역내나 회원국 등에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위원회는 화학 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복잡한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결과, 이번 사건에서 납득할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Neelie Kroes 경쟁위원은 말했다.

Ineos는 세계 여러 곳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회사로서, 중간생성물인 화학물의 생산, 판매, 유통 및 마케팅을 하고 있다. BP 도르마겐 사업부문은 독일 쾰른/도르마겐에 위치하고 있고, 에틸렌 산화물과 에틸렌 글리콜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BP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에틸렌 산화물은 무색의 가스로서 에틸렌의 부분적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데, 가연성이 높고 잘 폭발하며 독성과 발암성을 가진 위험한 물질이다. 에틸렌 산화물은 주로 섬유산업에서 이용되고 있는 글리콜을 만들 때 사용된다.

EU위원회는 결합기업이 탄생하는 경우 에틸렌 산화물 시장에서 매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조사 결과, 결합기업이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경쟁사들이 이에 충분히 반응할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더욱이 유럽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동과 동아시아에서 에틸렌 글리콜이 공급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EU 역내에서 에틸렌 글리콜의 생산 감소는 곧 에틸렌 산화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EU위원회는 Ineos가 반경쟁적 행위를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 사업자들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2006. 8. 10. EU위원회

EU위원회, 철강회사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기업결합 규칙에 따라 신고된 Steel Management Services S.L.(이하 Steel Management)에 의한 Fundia Reinforcing AS의 단독 지배를 승인하기로 했다. Steel Management는 Celsa Group의 지배를 받고 있다. Steel Management와 Fundia Reinforcing은 콘크리트 건축물을 보강하는 철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말고도 유럽 내에는 대규모 철강회사들이 있으며, 이들간의 기업결합은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두 기업은 생산단계에서는 유럽 내에서 다른 몇몇 대기업들과 함께 경쟁관계에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각각 다른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번에 신고된 기업결합이 EU 역내에서 심각한

경쟁제한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Steel Management는 Celsa Group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Celsa Group은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폴란드, 스페인과 영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철강회사이다. Fundia Reinforcing은 핀란드의 Rautaruukki Group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생산 공장은 노르웨이에 있고, 유통시설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와 덴마크에 있다.

위원회는 보강용 철재의 생산시장과 유통시장을 조사하면서, 보강용 철재는 형태와 크기, 물리적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제품별 시장을 각각 분석했다.

2006. 7. 28. EU위원회

EU위원회, Alcatel과 Lucent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프랑스 통신회사인 Alcatel과 미국 통신회사인 Lucent Technologies와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유럽에서 경쟁상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결론지었다.

Alcatel과 Lucent는 모두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사업자, 서비스 제공업자, 정부 및 기업들에 대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는 통신사업자들로 하여금 이용자

들에게 음성,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 등과 같은 각종 콘텐츠를 전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경쟁 이슈는 광네트워크 장비와 브로드밴드 액세스 솔루션의 공급에 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 결과, 결합기업이 이러한 장비 및 솔루션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는 경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경쟁사들이 이 시장들에서 다수 존재할 것이며, 고객(대부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이 산업에서 특징적인 입찰 과정에서 교섭력을 통해 결합기업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스위칭이나 라우팅 장비 및 협대역 스위치 등과 같은 Alcatel과 Lucent가 모두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 밖의 영역에서는 경쟁상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2006. 7. 24. EU위원회

유럽제1심법원, SonyBMG의 합병승인 결정을 무효화함

유럽위원회는 합병전에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는 형성되어 있지 않을 것 또는 합병 결과 그와 같은 지위가 형성될 위험성이 없을 것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

았다.

2004년 1월 9일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 2개사인 Bertelsmann AG와 Sony는 세계적인 레코드 음악사업(Sony의 일본에서의 사업을 제외)을 통합하여 새로운 3사를 설립하고, SonyBMG라는 이름하에 공동으로 경영을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안을 유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4년 5월 24일 유럽위원회는 합병은 특히 레코드 음악시장에서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강화시키게 되기 때문에 EC법(Community law)에 적합하지 않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였다. 관계자 청문회 후 유럽위원회는 2004년 7월 18일 합병은 유럽공동시장에 대해 적합하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3일 유럽위원회에 보다 먼저 절차에 관여해 온 2,500사의 독립계 음악제작회사가 회원으로 있는 국제단체인 Impala가 유럽제1심법원에 대해 동 결정의 무효를 요구하였다. 또한 이들은 본 건 소송을 약식절차에 의할 것을 청구하고 제1심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였다.

금일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레코드 음악시장에서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관련상품의 다양화, 시장의 불투명성, 대기업 5사간에 보복조치가 없다는 것으로부터 추정이 가능하다고 제1심법원은

소견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행위는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의 형성을 방해한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까지 시장의 투명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이론은, 필요한 법적 기준이 이우서에 의해 뒷받침 되지 못했으며, 심사에 있어서 명백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부정된다고 제1심법원은 판단하였다. 논의의 기초가 되는 요소는 불완전한 것이며, 유럽위원회가 고려해야 했던 모든 관계자료를 포함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유럽위원회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을 지지할 수 없다.

제1심법원은 또한 유럽위원회는 보복조치가 과거에 행해진 적이 있었던 판례법에 의하면 기업이 공통규칙에 따르고 있는 경우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단지 효과적인 억제 메카니즘(장치)이 존재하고 있다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해서 증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신뢰성 있는 효율적인 억제수단이 특히 일탈한 레코드 회사를 편집에서 제외함으로써 제재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번의 결정 및 사안에서 드러났다고 제1심법원은 언급하였다. 또한 본 건에 관하여 설사 보복조치가 과거에 행해졌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 심사였다고 해도 유럽위원회의 심사는 불충분하였다. 청문회에서는 조금

도 그 목적을 달성 또는 보증하는 수준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2가지 근거는 유럽위원회가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근거 자체의 잘못은 결정을 무효화 하는 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더욱이 합병후에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은 유럽위원회가 몹시 서둘러서 심사를 행하고 결정에 있어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을 보여주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유럽위원회는 합병이 공동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할 위험성은 일으키게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수 없이 투명성의 결여 및 과거에 보복조치가 이용되었다는 증거의 결여에 근거할 수는 없다고 제1심법원은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제1심법원은 재판절차 중 당사자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특히 Impala는 약식절차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과 태도가 대체로 모순적이며,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여졌다. 이 때문에 제1심법원은 Impala가 재판비용의 4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일본 『공정취인』 2006년 8월호에서 발췌
2006. 7. 13. 유럽사법법원 발표문

유럽위원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2004년 3월의 결정 불이행에 대해 2억 8,050만 유로의 이행제재금을 과함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04년 3월의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있어서 과해진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아니하자 동 사에 대해 2억 8,050만 유로의 이행제재금을 과하였다.

2004년 3월의 결정은 EC조약 제82조에 규정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마이크로소프트가 행하였다고 인정하고, 동 사에 대해 동 사 이외의 work group sever가 윈도우즈 PC 및 서버와 완전한 상호운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문서를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사회규칙 1/2003호 24조2항을 적용하여 금일의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동 의무를 완전하는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 결정은 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준수를 태만히 한다면 이행제재금 총액을 하루당 300만 유로까지 증액시킬 수 있다.

「유럽위원회는 EU법을 준수시킬 의무가 있으며,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2004년 3월 유럽위원회 결정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도록 결정을 항상 명확히 해 왔다」고 유럽위원회 경쟁담당위원 Neelie Kroes는 언급하였다. 더욱이 「결정으로부터 2년 이

상이 경과한 것에 더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소한 제1심법원에서 동 법원 장관이 제출한 명령은 동 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중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 위법행위를 끝내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다. 나는 이와 같은 계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이행제재금을 징수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어떠한 기업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EU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EU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해 제출된 최신 기술자료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준수한 것이 되며 그 이상의 이행제재금 지불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 것을 매우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2004년 3월 유럽위원회의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에 work group sever OS의 개발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대해 상호운용정보를 완전하고도 정확하게 개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에 의한 당해 명령의 집행 중지의 제소를 유럽제1심법원이 2004년 12월에 기각한 것에 이어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한 상호운용정보가 완전하고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5년 11월 10일,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2005년 12월 15일부터 (1) 완전하고도 정확한 상호운용정보를 제공한다, (2) 당해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한다라는 의

무를 동 사가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속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하루당 최대 200만 유로의 이행제재금을 지불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금일의 결정은 2006년 6월 20일 현재에도 2004년 3월에 결정한 상호 운용정보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제공에 대한 명령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것에 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무는, 달성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기준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의무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유효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명확화 된 것이며, 이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1) 결정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준수상황에 관해 유럽위원회에 기술적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는 감시수탁자 및 (2) 유럽위원회의 외부기술 어드바이저인 TAEUS의 어드바이스에 기초하여 유럽위원회는 결론을 내렸다. 동 절차의 착수시점으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위원회의 결론의 기초가 되는 모든 리포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11월 10일에 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특정할 2가지 요소 가운데 상호운용정보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제공이라는 사항은 서버 OS의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점

에 관한 불이행은 위반행위의 시정효과를 방해하였다. 이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점에 관한 불이행은 하루당 200만 유로의 이행제재금 중 대부분을 구성한다고 보고, 이 점에 관한 불이행의 요소로서 하루당 150만 유로의 이행제재금을 과하였다.

또한 금일의 결정은 이사회규칙 1/2000호 24조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며, 만약 마이크로소프트가 완전하고도 정확한 상호운용정보의 제공 및 당해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내에 이용 가능한 상태로 한다는 의무에 응하지 않는다면 2006년 7월 31일부터 하루당 이행제재금액을 300만 유로로 인상하여 과할 가능성을 명시하였다. 더욱이 불이행에 대한 그 이상의 이행제재금의 부과는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본 『공정취진』 2006년 8월호에서 발췌
2006. 7. 12. 유럽위원회 발표문

유럽위원회, 가격카르텔에 참가한 아크릴글라스 제조업자에 대해 3억 4,456만 유로의 제재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Arkema(구 Atofina), Degussa, ICI, Lucite 및 Quinn Barlo(구 Barlo)가 아크릴글라스 시장의 카르텔에 참가하여 EU조약이

금지하는 제한적 거래관행(조약 제 81조) 규정에 위반했다고 결정하였다. 그 결과 위반기업 중 4개사(Total/Elf Aquitaine/Arkema, Lucite, ICI 및 Quinn Barlo)에 대해 총 3억 4,456만 2,500유로의 제재금이 부과되었다. Arkema 및 ICI는 재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제재금은 50% 증액되었다. Degussa는 재위반을 했으나 유럽위원회의 감경방침(leniency)에 따라 당해 카르텔에 대해서 최초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면제를 받지 못하면 제재금은 과해질 것이다. 5개사는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EEA 역내에서 아크릴글라스에 관해서(목표)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에 합의하며, 상업상 중요하고도 비밀스런 정보를 교환해 왔다. 아크릴글라스는 특히 자동차, DVD, 렌즈, 가정용품, 전기기구, 욕실·샤워 등의 용품에 대해서 폭넓게 사용되었다.

Neelie Kroes 경쟁담당위원은 「카르텔은 고민거리다. 카르텔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한다. 나는 ICI와 Arkema라는 기업이 또 다시 처벌을 받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동 제재금은 이러한 모든 기업의 경영자와 주주에게 찬 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카르텔은 허용할 수 없는 또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아크릴글라스 또는 메타크릴수지

(PMMA)는 광범위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PMMA 성형화합물은 가정용품, 광학매체(DVD, 렌즈) 및 전자기기 이외에 자동차산업에서 headlamp, tail-light, 그리고 dashboard 글래스와 같은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PMMA 고정시트(sheet)는 주로 채식광고장치와 shop 인테리어 디스플레이에 이용된다. PMMA 위생기구는 주로 욕조, 샤워 트레이 제품에 이용된다. 또한 이러한 상품은 일반적으로 아크릴 글라스라 불리는 Plexiglas, Perspex, Acrylite, Acryplast 및 Lucite라는 상표명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2002년 12월 Degussa는 유럽위원회에 대해 본 건 및 과산화수소 사건의 쌍방에 대해 제재금면제신청을 하였다. 그 후 유럽위원회는 몇몇 기업이 과징금의 감면을 신청하는데 방아쇠 작용을 한 비공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Quinn group은 위반행위가 종료한 후 Barlo로부터 구입했기 때문에 동 그룹의 최종적인 모기업(Quinn Group Ltd)은 금일의 결정의 수취인은 되지 않는다.

명백한 증거

1999년 10월 경쟁사업자는 PMMA 성형화합물의 유럽에서의 가격수준을 인상하는 조정을 하기 위해 Dublin 호텔의 룸에서 모였다. 손으로 쓴 메모에는 11월에 유럽시장에 가격인상

을 통지하고, 2000년 1월에는 PMMA의 가격인상에 참가자들이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메모에는 Atofina가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룩스에서, ICI가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에서, Deguss가 독일과 스페인에서 각각 가격인상을 통지할 것을 동의하였다. 2000년 8월 독일의 호텔에서 행해진 회합의 기록에서는 회합은 2000년 11월의 가격인상 조정이 초점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경쟁사업자는 상세한 가격정보 교환 후 1kg sheets 당 0.1유로 인상할 것에 동의한 것 외에 시트의 재단, 염색과 같은 부가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도 의논하였다.

제재금

명확히 드러난 행위는 EC조약이 금지하는 제한적 거래관행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이다. 제재금은

확정하는데 있어 위원회는 EEA 역내 시장의 규모(약 6억 6,500만 유로), 카르텔의 기간 및 관여한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였다. Arkema 및 ICI는 재위반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제재금을 50% 증액하였다.

몇몇의 기업은 위반을 폭로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 협력에 대해 유럽위원회의 leniency 고시에 따라 감면이 주어졌다. Degussa사는 2억 6,446만 8,750유로 전액 감면이 인정되었다. Total/Elf Aquitaine /Arkema/Altuglas/Altumax 및 Lucite는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제재금이 감액되었다. 제재금의 감액 인가는 제공한 정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얼마나 신속히 폭로하느냐에 달려있다.

본 건에서 과해진 3억 4,456만 2,500유로라는 제재금의 총액은 카르텔에서 과해진 제재금 총액으로는

〈유럽위원회가 과한 제재금액 및 감액율〉

	기업명	감액율(%)	제재금(유로)
1	Degussa(독일)/Rogm(독일)/Para-Chemie(오스트리아)	100	0
2	Total/Elf Aquitaine/Altuglas/Altumax※(모두 프랑스)	40	219,131,250
3	ICI(영국)	0	91,406,250
4	Lucite International/ Lucite International UK(영국)	30	25,025,000
5	Quinn Barlo(아일랜드)/Quinn Plastics NV(벨기에)/Quinn Plastics GmbH(독일)	0	9,000,000
	합계		344,562,500

기업명 란에(※)로 표시된 법인은 과해진 제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공동 또는 개별 책임을 지는 법인

지금까지 네 번째로 큰 것이다.

손해배상의 제기

본 건에서 보여준 반경쟁적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와 기업은 누구라도 회원국의 법원에 대해, 행위가 행해졌으며 그것이 위법이라는 증거로서 공표된 위원회의 결정문의 요지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유럽위원회가 과한 제재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산정될 것이다.

일본 『공정취인』 2006년 7월호에서 발췌
2006. 5. 31. 유럽위원회 발표문

일 본

공취위, 미즈호 은행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주식회사 미즈호 은행이 제공하는 주택용자 거래와 관련된 표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또한 전국 은행 공정거래협의회에 대해 향후 이와 같은 행위의 방지와 적절한 표시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쿄도 치요다구에 있는 주식회사 미즈호 은행은 고정금리 방식에 의한

주택용자 거래에 있어서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전국의 지점을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배포한 2종류의 매장 광고지에서, 마치 2006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신청을 하여 6월 30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광고지에 표시된 대로 금

리가 적용되는 것 같이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3월 31일까지 신청했다고 해도 대출이 4월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표시대로의 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표시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었다.

표시 매체	「주택용자 장기 고정금리 캠페인」이라고 기재된 광고지	「주택용자 특별 금리 캠페인」이라고 기재된 광고지
표시 기간	200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2006년 3월 1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까지
표시 내용	「【대상】 2006년 3월 31일(금)까지 신청 접수분(2006년 6월 30일(금)까지 차입분) 15년 고정 2.65%(연이율) 20년 고정 2.65%(연이율)」라고 기재	「【대상】 2006년 3월 31일(금)까지 신청 접수분(2006년 6월 30일(금)까지 차입분) 차입 금리 당초 10년 고정 2.25% (매장 기준 금리보다-1.5%)(연이율) 당초 5년 고정 1.65% (매장 기준 금리보다-1.5%)(연이율) 당초 3년 고정 1.15% (매장 기준 금리보다-1.3%)(연이율) 당초 2년 고정 1.10% (매장 기준 금리보다-1.1%)(연이율)」라고 기재
	상기 표시와 비교하여 작은 문자로, 「상기 금리는 3월 실행분입니다」라고, 또한 상기의 표시와 떨어진 곳에 상기 표시와 비교하여 작은 문자로, 「차입 금리는 신청시는 아니고 실제로 차입해 주시는 날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	상기 표시와 떨어진 곳에 상기 표시와 비교하여 작은 문자로, 「당초 차입 금리는 신청시는 아니고 실제로 차입해 주시는 날의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시의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
실제	고정금리 방식에 의한 금리는 매월 재검토하고 있어 광고지에 기재된 금리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차입했을 경우에게만 적용되는 금리였다.	
	3월중에 신청하고 4월부터 6월에 대출 받았을 경우, 표시된 금리보다 0.2%~0.4% 고가가 된다.	3월중에 신청하여 4월부터 6월에 대출 받았을 경우, 표시된 금리보다 0.05%~0.3% 고가가 된다.

해당 주택용자 거래와 관련된 조건에 있어서 일반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경품표시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에 대하여, 실제의 것 또는 당해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에 관한 것보다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일반소비자에게 오인되도록 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2006. 8. 8. 공정취인위원회

제2회 APEC·경쟁정책 연수 개최

공정취인위원회는 8월 8일~10일 타이완국 상무성과 함께 제2회 APEC·경쟁정책 관련 연수 코스를 타이 방콕에서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APEC 역내의 경쟁정책 진전 상황이나 접근방법의 차이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배려하면서, 각국과 지역의 경쟁 관련 당국의 의견교환 및 정보교환을 통해서 경쟁정책의 운용과 관련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여 행해졌다.

‘사업 통합의 규제’, ‘경쟁 주창’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연수 과정에는 미국, 인도네시아, 호주, 타이, 대만, 중국, 일본,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베트남, 페루, 홍콩, 러시아,

UNCTAD 등에서 약 45명의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작년 제1회 APEC·경쟁정책 관련 연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바 있다. 이 연수 과정은 2005년부터 2009년에 걸쳐 매년 1회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협력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2006. 8. 4.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시호로초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시호로초 농업협동조합(이하 JA시호로초)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3항(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했다.

훗카이도 하동군에 있는 JA시호로초는 조합원이 생산 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영농 대출금」 등 단기대부금과 관련하여, JA시호로초로부터 생산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조합원에게 해당 단기대부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했다. 또한 육용우생산업을 영위하는 조합원과의 토지, 외양간 등 생산 설비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이 JA시호로초 이외에서 생산 자재를 구입하고 JA시호로초 이외의 자를 통해서 육용소를 판매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함

으로써,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을 붙여서 해당 조합원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JA시호로초의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9조 위반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취인위원회는 JA시호로초에 대해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2006. 7. 21. 공정취인위원회

공취위, 교토 농업협동조합에 대해 경고

공정취인위원회는 교토 농업협동조합(이하 JA교토)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3항(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의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고했다.

교토부 카메오카시에 있는 JA교토는 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인 육묘 센터, 라이스 센터 및 대형 농업창고 등 3시설(이하 3시설)에 대해, 늦어도 2001년 이후(대형 농업창고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JA교토로부터 생산 자재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3시설 각각의 이용 안내문에 기재하고, 조합원에 대해 알림으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JA교토로부터 생산 자재를 구입하도록 했다. 또한 JA교토를 통해서 쌀을 출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3시설 각각의 이용 안내문에 기재하고, 해당 조합원에게 JA교토를 통해서 싸을 출하하도록 한 협의가 인정되었다.

JA교토의 이러한 행위는 독점금지법 제19조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취인위원회는 JA교토에 대해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도록 경고했다.

2006. 7. 14. 공정취인위원회

중 국

溫家寶총리,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하여 반독점법(초안)을 채택

국무원의 溫家寶 총리가 7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개최, 토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초안)」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반독점법은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독점행위를 방지, 저지할 것이며,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법률제도라고 인식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반독점에 관한 규정은 기존 법률과 행정법규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이미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과 국제경쟁에의 참가에 관한 필요에 적응할 수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인 반

독점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정하게 질서있는 시장환경을 형성, 경제활력의 보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촉진을 위해 보다 한층 법적인 보장을 제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안은 중국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외국의 유익한 경험을 토대로 하였으며, 독점에 관련된 협정의 금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그 밖에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 조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반독점법(초안)」을 거듭 수정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 심의가 행해지도록 국무원으로부터 법안을 제출할 것이 결정되었다.

일본 『공정취인』 2006년 7월호에서 발췌

2006. 6. 7. 국무원변공청 발표문